

고용정책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정태호의원 대표발의)

의안 번호	20699
----------	-------

발의연월일 : 2026. 8. 21.

발 의 자 : 정태호 · 허성무 · 오세희
이정문 · 김 윤 · 윤준병
김영환 · 서미화 · 김교홍
이학영 · 이주희 의원
(11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국가가 고용에 관한 정책을 수립·시행하여 국민의 직업능력을 개발하고 더 많은 취업기회를 가지도록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음.

그런데 고용촉진 지원대상에 장애인이 명시적으로 포함되지 않아 고용시장에서 장애인에 대한 불합리한 차별이 발생하고 있다는 의견이 제기됨.

이에 법률에 장애인을 지원대상으로 명시함으로써 국가가 장애인에 대한 고용촉진 방안을 적극적으로 마련할 수 있도록 하여 취업 취약계층에 대한 보호를 강화하고자 함(안 제25조).

법률 제 호

고용정책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고용정책 기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5조의 제목 및 같은 조 제1항·제2항 중 “고령자”를 각각 “장애인
· 고령자”로 한다.

부 칙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25조(청년·여성· <u>고령자</u> 등의 고용촉진의 지원) ① 국가는 청년·여성· <u>고령자</u> 등의 고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이들의 취업에 적합한 직종의 개발, 직업능력개발훈련과정의 개설, 고용기회 확대를 위한 제도의 마련, 관련 법령의 정비, 그 밖에 필요한 대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제25조(청년·여성· <u>장애인</u> · <u>고령자</u> 등의 고용촉진의 지원) ① ----- <u>장애인</u> · <u>고령자</u> ----- ----- ----- ----- ----- ----- -----.
② 제1항에 따른 청년·여성· <u>고령자</u> 등의 고용촉진에 필요한 사항은 따로 법률로 정한다.	② ----- - <u>장애인</u> · <u>고령자</u> ----- -----.